



#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

GTECP-F-150

제 · 개정일  
2018-08-16

1 / 3

##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

<2015.03.30. 제정>  
<2018.08.16. 1차 개정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10조 및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 의거 경기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“대학별고사”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실기 및 실험고사,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말한다)를 대상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
2.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 및 출제여부에 관한 사항
3. 자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4. 자체영향평가 결과 공지에 관한 사항
5.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
6.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7. 기타 선행학습 방지대책 및 자체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입학관리팀장으로 하며, 선임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 1인과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8.08.16.>



##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

GTECP-F-150

제 · 개정일  
2018-08-16

2 / 3

③ 위원회의 사무는 [입학관리팀](#)에서 관장하고,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학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8.08.16.>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 종료 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과의 공시) “특별법” 제10조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, “시행령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 지급) ①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자체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

#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

GTECP-F-150

제 · 개정일  
2018-08-16

3 / 3

## 부 칙(2015.03.30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18.08.1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